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
(화재 50% 이상 부보형)

계약의 체결

제1조(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며,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1% <연 5.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4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자에게 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목적」이라 합니다)이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위 1., 2.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화재손해위로금 및 폐기물처리비용을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책임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는 제3조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이하「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

제5조(보험목적의 범위)

① 아래의 물건은 보험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보험목적이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 동산, 집기비품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보험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
   ㉯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써 각 호, 실이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안수, 침구(침질,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3. 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

4.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위 8.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10. 전기적 사고로 인하여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생긴 손해

제7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모집인등의 청약서 임의기재행위의 효력)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집인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10조(청약의 철회)

①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 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의 변경

제11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보험목적을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개시일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의 5.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 어 풀 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3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①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② 계약을 맺을 때 보험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제14조(보험료의 납입주기)
① 보험료의 납입주기는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6개월납, 3개월납 또는 월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제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중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에 대하여 계약자가 서면으로 보험료 납입주기 및 수금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갈음합니다.
④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 〈연 4.5%〉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시에 할인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제1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6조에 규정된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39조에 규정된 계약자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까지의 이자(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보험료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최고하고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17조(해지된 계약의 부활)

① 보험료의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부활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 <연 5.5%>로 계산한 이자)를 내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의 부활에 따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승인이 있는 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경우 제1조,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7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1조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③ 1. 회사는 손해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2항의 1.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2항의 1.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4】에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2항의 1., 2.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9조(계약취소권 등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 또는 제18조 제2항을 사유로 손해발생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별표4】에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별표4】의 해약환급금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적립순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중에 보험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로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보험약관대출이율 - 4%
1년이상 2년미만	보험약관대출이율 - 3%
2년이상	보험약관대출이율 - 2%

제21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정해진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22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20조 및 제21조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는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 <연 5.5%>로 계산된 금액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이 보험의 약관대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명시하여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연 4.5%>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환급금 발생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계약자 등이 수령하지 아니한 만기환급금과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적용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1.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간은 보장부분 예정이율의 50%<연2.25%>, 1년 후부터 환급금 청구일 까지는 1%를 연단위 복리로 적용합니다.

손해의 발생

제2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등인근주민의 확인서)
3. 그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25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하 「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보험목적의

가액(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27조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27조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의 보상

제2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2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5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5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5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위 1. 및 2.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1. 및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목적이 공장물건인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험가입금액}}{\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보험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보험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④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합니다.

제28조(화재손해위로금의 보상)

① 회사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지급보험금의 10% 해당액을 화재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화재손해위로금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제29조(폐기물처리비용의 보상)

① 회사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로 인하여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지급보험금의 10% 해당액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1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금의 수령방법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분할지급
2.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증액하여 지급
3.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이자와 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4.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이자만 지급한 후 원금은 일시금으로 지급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회사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해서 이 보험의 보장부분 예정이율+1%<연 5.5%>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24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20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2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33조(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손해보상후의 절차

제35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36조(잔존물)

회사가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보험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3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목적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2항을 적용합니다.

그밖의 사항

제38조(보험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언제든지 보험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계약자 대출)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해약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위의 대출금이 있으면 상환기일에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그 원리금을 뺍니다

제40조(계약자배당금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1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과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계약내용의 교환)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신용정보업무규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에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기재하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다.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제44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5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6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내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4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9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특별약관(1종)
(화재 50%이상 부보형)

1.위험품 추가약관

※ 보통품만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안에는 화재보험요율서상의 A급, B급,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 A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안에는 화재보험요율서상의 B급,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 B급 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안에는 화재보험요율서상의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2.특수건물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재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2.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특별약관 3.의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에서의「50%」는「80%」로 변경하여 적용하며,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가.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특별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후 보험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시점

1. 보험가입금액의 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용요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3.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이외에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특별약관(1종) 4. 내지 17.을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 1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화재손해(그을음 손해를 포함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에서 5만원을 빼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에서의 「50%」는「80%」로 변경하여 적용하며,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유리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손해 이외에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 「유리」라 합니다)에 아래와 같은 사고로 생긴 파손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밖에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3.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4. 유리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2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27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에서의 「50%」는「80%」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의 손해 이외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및 그에 따른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험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폭발 또는 파열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4. 풍재 또는 수재에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목적인 네온싸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3조(자기부담금)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액에서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당해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중 적은금액을 빼고 보통약관 제27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에서의 「50%」는「80%」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구내폭발·파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이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5.는 제외)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폭발 또는 파열의 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에서의「50%」는「80%」로 변경하여 적용하며,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8. 점포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목적(피보험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생긴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2. 벼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떨어짐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2.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3.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제3조(면책기간)

회사는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초 3일까지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휴업일수에서 빼고 보상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② 추정복구기간 : 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복구기간 :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목적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총이익 : 매출액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기초재고량을 더하고 기말재고량을 뺌)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⑤ 경상비 :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⑥ 매출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중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내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⑦ 휴업일수 비율 :

$$\frac{\text{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text{면책기간}}{\text{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일수(공휴일을 제외하며, 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단, 일부 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정을 해야 합니다.

⑧ 지급한도율 :

$$\frac{\text{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총이익} \times 1.1}{\text{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매출액}}$$

제5조(휴업손실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조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휴업손실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휴업손실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휴업일수 비율

② 제1항의 휴업손실보험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에서 복구기간내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특별비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손실을 입고 휴업일수 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보험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특별비용」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 비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중복지급)
회사는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 보험금과 특별비용 보험금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정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9조(중복보험)
제1조의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험금의 합계액(이하 「보상책임 합계액」이라 합니다)이 제5조 및 제6조의 휴업손실보험금과 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 「손해액」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0조(보험가입금액의 자동복원)
회사가 휴업손실보험금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11조(계약의 효력상실)
제1조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손해발생시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9. 도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도난당한 보험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 생긴 도난
6.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보험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8.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0.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가 제9조 제1항의 2.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보험자가 제8조 제2항,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3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1년간, 다음 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당해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2조 제2항의 1. 내지 5.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2조 제2항의 2.의 비용, 3.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4.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 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5조(양도)

이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6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 보험기간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11. 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에서 정한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피보험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보험자로 봅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8.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지급보험금)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싯가(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보험가액}}$$

3.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에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7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이 특별약관에 따라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2. 음식물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6.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1.의 손해배상금 :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의 2., 3., 4. 및 5.의 비용합계: 매사고마다 500,000원
3. 위 1. 및 2.의 지급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당해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첫날 해당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6.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10.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비용
14.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3. 가스사고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 어 풀 이>

「가스사고」라 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의 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1.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1.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6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별표3】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과 2.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위 2.와 3.의 금액의 합산액
6. 위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③ 제1항의 2., 3., 4. 및 5.의 비용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6.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9.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10.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4.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수건물이라 함은「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말합니다.

②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③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 시행 규칙 제2조(【별표5】 참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6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특별약관 3.의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4-가.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특수건물)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보통약관(1종)(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 이 추가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15.비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아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그 타인이 입은 신체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회사는 보험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이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피보험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액)

① 제1조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아래의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

② 1. 제1항의 1.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1항의 2.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합니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1. 및 2.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2. 및 3.의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⑤ 제1항의 3.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의 1.의 금액에서 제1항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비례배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신체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급의무)
① 피보험자가 제5조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신체손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특별약관 3.의 화재손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5-가.비특수건물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보통약관(1종)(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비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하여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6.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10.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할 때(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을 하게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태만히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전항과 같습니다.

⑤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별표4】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

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제2항의 1.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2항의 1.에 의해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표4】에 정한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 2.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2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이하 「사망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8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 (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이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지급율표의 지급율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별표1】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별표1】의 각호에서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한지급율을 합산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에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쪽 각각의 지급율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제8조에 정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과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보험금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의 80%미만 일 때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약의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11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12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의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6-가.가족상해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상해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가족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민법 777조)
③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6-나.종업원 단체상해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III) 보통약관(1종)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에 가입된 보험목적의 경영주를 계약자로 하고 그의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써 종업원의 수가 해당 보험년도 첫날을 기준으로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해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7.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등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취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강도손해」라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강도손해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의 강도손해는 형법 제333조 제339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만을 말하며 단순한 절도행위(형법 제329조 제332조)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②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중에 생긴 강도손해
③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제3조(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 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2. 그 밖의 필요한 증거서류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강도손해 위로금의 지급)
회사는 제1조의 강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사고당 100만원을 강도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8. 의약품 등 위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의약품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의 비용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제6항의 비용은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으로 생긴 배상책임
2. 결함있는 의약품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3. 의약품등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배상책임
4. 전매(轉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등에 기인한 배상책임
5.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에 기인한 배상책임
6. 의약품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7. 제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9.약국시설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국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②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④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⑤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한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배상금과 제2조 제2항 및 제5항의 비용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제6항의 비용은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4.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음)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포함)로 생긴 배상책임
3.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 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8.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9. 급배수관, 온냉방장치, 소화전, 스프링쿨러 기터 업무용 또는 가사용 기구에서의 배출, 누출, 범람하는 액체, 기체, 증기등에 의해 재물의 멸실, 훼손 혹은 오손에 기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 포함)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1종)(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1. 및 2.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3.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할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1. 및 2.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3.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4.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1조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0.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제1종단체(급여관계단체) : 단체의 소속원이 그 단체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관공서, 국영기업체, 기업체 및 공장등의 단체
2. 제2종단체(법정단체) : 제1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등의 단체
3. 제3종단체(규약단체) : 제1종 및 제2종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인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책임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해약환급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책임은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해약환급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로부터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인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인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별 위험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 적용하거나 단체의 평균연령 또는 평균급수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우리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당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적용특칙)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칙)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1.보험료 자동이체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2.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3.전자거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청약서 부본 및 보험약관의 교부)
①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보험약관 전부 및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보험약관 교부와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회사는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이하「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지정계좌로부터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 세금우대종합저축 적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계약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합니다.

제2조(세금우대 요건)

①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계약 청약시에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일부터 해지일 또는 만기일까지의 기간(이하「계약유지기간」이라 합니다)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계약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세금우대등록)

제2조에 의해 계약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한 경우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등록하여 드립니다.

제4조(가입한도)

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 납입할 보험료 총액은 전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포함하여 1인당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만60세(여자는 만5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미성년자 포함) 및 상이자인 경우에는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어풀이>
장애인 및 상이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된 자

② 이 계약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 환급금등은 1인당 가입한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은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 합계액중 일부만을 정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위①항의 가입한도를 적용합니다.

제5조(가입한도 산정방법)

① 일시납계약의 경우에는 일시납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② 연납 및 분할납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중 납입할 보험료 총액으로 합니다.

제6조(한도변경)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가입한도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세금우대 처리)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합니다.

제8조(표시방법)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표지 등에「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드립니다.

제9조(특별중도 해지)

이 특별약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유지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도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 해외이주
2. 천재 · 지변
3. 계약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계약자의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6.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

제10조(세금우대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별 세금우대종합저축 자료를 세금우대저축 자료집중기관에 제출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수익자포함)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자(수익자포함)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오너플러스안심보험(Ⅲ)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1> 후유장해지급율표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때	6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4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6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20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20
4) 한 귀의 청력이 50㎝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흉한 상처)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2 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 1 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30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16) 한 다리가 5㎝ 이상 짧아진 때	34
17) 한 다리가 3㎝ 이상 짧아진 때	20
18) 한 다리가 1㎝ 이상 짧아진 때	7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 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2
3)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때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30
6) 한 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손가락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링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2
2)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관절 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 발가락마다)	5
5) 한 발의 5 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1 발가락마다)	3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

주)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주)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률에 관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률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지급율 : 사망.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임

< 용 어 풀 이 >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2. 이의 결손 :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이상 파절된 경우

3. 외모의 뚜렷한 추상
   추상장해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1) 얼굴
      ①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4. 외모의 추상
   1) 얼굴
      ① 손바닥 1/4 크기 이상의 추상
      ②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③ 직경 2㎝ 이상의 조직 함몰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② 두 개골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추상

5. 등뼈의 장해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또는 2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고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또는 10°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때
② 두 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 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6.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7.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8.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 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

9.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① 이동동작
      ② 음식물 섭취동작
      ③ 옷입고 벗기 동작
      ④ 대소변의 배설 후 뒷처리
      ⑤ 목욕 및 세면

10.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同側)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 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별표2】

상해급별 보험금액표

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1 급	가스사고 배상책임담보,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 1,500만원 비특수건물의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 1,000만원	1.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추체분쇄성골절 3.척추제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 4.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태 6.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경골하 3분의 1부 분쇄골절 9.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인 상해 10.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해 유경식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급	800만원	1.상박골간부분쇄형골절 2.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3.두개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슬관절탈구 6.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천장골간 관절탈구 9.그 밖에 2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3 급	750만원	1.상박골경부골절 2.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골절상해 4.수근주상골골절 5.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대퇴골간부골절 7.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내장 11.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 급	700만원	1.대퇴골과부골절 2.경골간부골절 3.거골경부골절 4.슬개인대파열 5.견갑관절부의 회선근개파열 6.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3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 급	500만원	1.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4.족중골골절 5.상박골간부골절 6.요골원위부골절 7.척골근위부골절 8.다발성극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족배부근건파열창 10.수장부근건파열창 11.아킬레스건파열 12.2도 화상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4.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 급	400만원	1.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다발성 중족골골절 5.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6.단순슬개골골절 7.요골간부골절 (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척골간부골절 (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척골주두골절 10.다발성 중수골골절 11.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2.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 급	250만원	1.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상박골상과 부굴곡골절 4.고관절탈구 5.견갑관절탈구 6.견봉쇄골간관절탈구 7.족관절탈구 8.2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 급	180만원	1.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쇄골골절 3.주관절탈구 4.견갑골골절 5.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비골(다리)간부골절 7.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다발성늑골골절 9.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 급	140만원	1.척추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요골골두골골절 3.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중수골골절 6.수근골골절 (주상골을 제외한다) 7.족근골골절 (거골, 중골을 제외한다) 8.중족골골절 9.족관절부염좌 10.늑골골절 11.척추제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 (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완관절탈구 13.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 급	120만원	1.외상성슬관절내혈종 2.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완관절부염좌 5.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 · 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 급	100만원	1.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비골(코)골절 4.수지골골절 5.족지골골절 6.뇌진탕 7.고막파열 8.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 급	60만원	1.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4치이상 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 급	40만원	1.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2치이상 3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 급	20만원	1.3일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7일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1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게 보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등급 보다 한급 낮게 보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3】

후유장해급별 보험금액표

※ 비특수건물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의 경우 아래 지급액의 0.5배액지급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 급	6,000만원	1.두 눈이 실명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반신마비가 된 사람 6.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급	5,400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급	4,800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급	4,200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급	3,600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급	3,000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에 뚜렷한 기능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급	2,400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 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 급	1,800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급	1,440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 급	1,080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14치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급	840만원	1.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6.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 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0.10치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 급	600만원	1.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7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쇄골 · 흉골 · 늑골 ·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 급	360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한 눈에 반맹증 ·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5치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급	240만원	1.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3치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한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을 타인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4】

해약환급금 예시표

1. 기본계약

가) 보장부분

없 음

나) 적립부분

▶ 3년납 3년만기

(적립보험료 1만원)

경과기간	연납	6개월납	3개월납	월납
1년	7,630	15,090	30,020	89,740
2년	18,250	36,030	71,580	213,800
3년	29,390	58,000	115,240	344,190

주) 상기 예시금액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7.5% 적용시 해약환급금이며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5년납 5년만기

(적립보험료 1만원)

경과기간	연납	6개월납	3개월납	월납
1년	6,790	13,440	26,730	79,900
2년	17,260	34,060	67,680	202,140
3년	28,230	55,720	110,710	330,650
4년	39,800	78,570	156,100	466,230
5년	52,020	102,680	203,990	609,270

주) 상기 예시금액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7.5% 적용시 해약환급금이며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7년납 7년만기

(적립보험료 1만원)

경과기간	연납	6개월납	3개월납	월납
1년	6,480	12,820	25,500	76,210
2년	16,820	33,200	65,960	196,990
3년	27,660	54,600	108,480	323,990
4년	39,100	77,180	153,330	457,970
5년	51,170	101,000	200,660	599,310
6년	63,900	126,130	250,590	748,440
7년	77,330	152,640	303,260	905,760

주) 상기 예시금액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7.5% 적용시 해약환급금이며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10년납 10년만기

(적립보험료 1만원)

경과기간	연납	6개월납	3개월납	월납
1년	6,060	11,990	23,850	71,300
2년	16,270	32,110	63,800	190,540
3년	26,970	53,240	105,780	315,940
4년	38,270	75,540	150,080	448,250
5년	50,180	99,060	196,810	587,820
6년	62,760	123,880	246,120	735,080
7년	76,020	150,060	298,130	890,430
8년	90,010	177,680	353,010	1,054,330
9년	104,770	206,820	410,900	1,227,250
10년	120,350	237,560	471,980	1,409,670

주) 상기 예시금액은 이 보험의 약관대출이율 7.5% 적용시 해약환급금이며 약관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선택계약

없 음

【별표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 1999.5.24 개정 및 시행(법률 제 5982호) -

제8조(보험금액)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2.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3. 신체손해 배상책임보험중 부상의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전항 제1호에 규정한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8조】
- 2000.12.30 개정 및 시행(대통령령 제 17058호) -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의 경우에는 6,000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최고 1,500만원).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최고 6,000만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다.

⑤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1998.4.21 개정 및 시행(재경부령 제 16호) -

제2조(실손해액)

① 영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